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참 고</h1>	
		배포일시	2018. 5. 28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 당 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김경은, 주무관 하철호 ·☎ (044) 201-3384, 3390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건설사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및 입찰참가 제한 등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.
 - (현행)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다면
 - (개정)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(공사비의 100분의 20)이 부과되고, 해당 시·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.
 - ② 또한, 건설사가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.

- (현행) 그동안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.
 - (개정) 이에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·감독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하여 홍보업체가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, 입찰참가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.
-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·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, 조합 합동점검,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,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별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.
 -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·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경은 사무관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